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관련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IV. 2021회계연도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1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773,455,816,030	821,253,761,229	655,249,227,148	166,004,534,081
일반회계	760,574,643,710	808,844,988,720	647,451,262,768	161,393,725,952
특별회계	12,881,172,320	12,408,772,509	7,797,964,380	4,610,808,129

회 계 별	이월액(D)			보조금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35,386,207,040	33,269,458,661	0	10,889,559,363	△195,351,571	0	86,654,660,588
일반회계	34,886,207,040	33,074,229,961	0	10,791,224,963	△195,351,571	0	82,837,415,559
특별회계	500,000,000	195,228,700	0	98,334,400	0	0	3,817,245,029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12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7,734억 5,500만원보다 477억 9,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 80%인 6,552억 4,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60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353억 8,600만원, 사고이월비 332억 6,900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06억 9,4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5,400만원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86,654,660,588	32,072,968,000	54,581,692,588	
일반회계	82,837,415,559	28,692,533,000	54,144,882,559	
특별회계	3,817,245,029	3,380,435,000	436,810,029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5,4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286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8,0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41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3,600만원을 합한 545억 8,100만원이 2022년도 추경재원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15,715,733,000	7,938,082,000	7,219,952,980	246,097,470	472,031,550
일반회계	15,545,733,000	7,938,082,000	7,219,952,980	246,097,470	472,031,550
특별회계	170,000,000	0	0	0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5,900만원 보다 108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 외 25건 79억 3,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2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4,487	4,470	12,732	8,262	38,957
자활기금	935	114	234	120	1,049
노인복지기금	353	0	4	4	353
양성평등기금	402	54	105	51	456
청년미래기금	1,003	530	530	0	1,532
재정안정화기금	17,101	203	203	0	17,303
재난관리기금	5,482	2,181	4,956	2,775	7,663
옥외광고발전기금	1,242	△105	138	242	1,138
도로굴착복구기금	1,674	810	2,106	1,296	2,484
중소기업육성기금	4,515	655	4,276	3,622	5,170
남북교류협력기금	59	42	51	9	101
환경미화원차량유지기금	504	△15	27	42	49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73	16	29	13	289
식품진흥기금	943	-14	73	87	929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44억 8,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7억 3,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억 6,17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9억 5,740만원임.

2.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

가. 복지가족국 세입 총괄

(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241,398,220,000	243,603,886,130	243,517,540,370	99.9%
복지정책과	13,820,305,000	13,579,749,430	13,579,749,430	100%
복지지원과	55,617,013,000	55,644,407,180	55,613,419,960	99.9%
어르신 장애인과	104,399,872,000	104,488,765,390	104,433,421,030	99.9%
가족정책과	53,662,749,000	55,536,719,630	55,536,719,630	100.00%
아동청소년과	13,898,281,000	14,354,244,500	14,354,230,320	99.9%

나. 복지가족국 세출 총괄

(일반회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327,381,193,100	301,946,072,904	9,924,347,400	8,208,715,228	92.2%
복지정책과	20,132,258,000	18,170,554,344		606,303,621	90.2%
복지지원과	64,103,757,000	62,763,291,900		332,952,131	97.9%
어르신 장애인과	130,387,037,000	129,231,192,399	4,950,000	759,438,375	99.1%
가족정책과	81,013,715,900	74,324,459,852	1,284,902,000	1,667,721,480	91.7%
아동청소년과	31,744,425,200	17,456,574,409	8,634,495,400	4,842,299,621	54.9%

다. 집행잔액
(일반회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327,381,193,100	8,208,715,228	2,977,779,136		54,500,000
			52,427,110	5,108,008,982	16,000,000
복지정책과	20,132,258,000	606,303,621	434,482,459		1,500,000
				170,321,162	
복지지원과	64,103,757,000	332,952,131	273,675,651		
				59,276,480	
어르신 장애인과	130,387,037,000	759,438,375	551,814,377		53,000,000
			12,967,690	141,656,308	
가족정책과	81,013,715,900	1,667,721,480	1,480,869,309		16,000,000
			39,059,420	131,792,751	
아동청소년과	31,744,425,200	4,842,299,621	236,937,340		
			400,000	4,604,962,281	

라.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	11,856,000	7,570,330	0	4,285,670	63.85%
	재해구호관리	3,000,000	0	0	3,000,000	0%
	긴급복지	1,991,004,000	1,163,755,780	0	827,248,220	58.45%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위문	4,500,000	2,894,000	0	1,606,000	64.31%
복지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관	12,400,000	6,730,000	0	5,670,000	54.2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	642,392,000	66,815,000	0	575,577,000	10.41%
어르신 장애인과	카메라 속 우리이야기 '이막영화제' (주민참여)	8,020,000	2,367,210	0	5,652,790	29.52%
	노인교실지원	28,740,000	15,915,000	0	12,825,000	55.38%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40,500,000	87,500,000	0	53,000,000	62.28%
	기본경비	104,782,000	70,498,240	0	34,283,760	67.28%
가족정책과	소수의 다문화 가정 마음이 너무 아파요(주민참여)	15,000,000	0	0	15,000,000	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	9,415,470,000	36,192,200	5,375,144,000	4,004,133,800	0.38%
	아동수당 사업 홍보 및 운영	2,533,000	1,000,000		1,533,000	39.48%
	입양가족 지원	6,000,000	1,000,000		5,000,000	16.67%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9,020,000	3,063,400		5,956,600	33.96%
	금천 청년꿈터 추진	3,375,150,000	133,577,620	3,241,551,400	20,980	3.96%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298,368,000	2,407,792,376	1,448,143,896	60.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5,976,000	1,259,250,460	793,888,980	6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42,392,000	1,148,541,916	654,254,916	56.9%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1,298,368,000	712,074,180		576,770,430	54.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5,976,000	645,259,180		1,193,430	98.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42,392,000	66,815,000		575,577,000	10.7%

4.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구분	부서별	건수	금액	사유
계		3	16,870	
전용	복지정책과	1	1,500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어르신장애인과	1	8,670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전기자동차 구매
	아동청소년과	1	6,700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자산 취득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1	9,924,347	6	9,077,007	5	847,339
복지정책과	-	-	-	-	-	-
복지지원과	-	-	-	-	-	-
어르신장애인과	1	4,950			1	4,950
가족정책과	6	1,284,902	4	1,193,863	2	91,038
아동청소년과	4	8,634,495	2	7,883,144	2	751,351

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6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 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가족 정책과	어린이집 그린리모 텔링사업	시 설 비	569,136		569,136	[집행시기 미도래] 2021년 국비 교부되었으나 2022년 시비 교부 및 구비 편성(본예산 기반영)으로 2022년 사업 집행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시 설 비	1,402,094	1,014,459	360,000	[연도내 지출 불가] 사전행정절차(시 투자심사, 시 공공건축 심의등)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시설부대비	20,000		20,000	
	생활문화 센터 조성	시 설 비	238,000		238,000	[연도 내 지출 불가] 사전행정절차(시 투자심사, 시 공공건축 심의 등)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

	1인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지원	사무관리비	12,664	5,936	6,727	[연도 내 지출 불가] 서울시로부터 사업의 연속성 및 전액 집행을 위한 명시이월 조치 요청으로 이월하고자 함
아 동 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48,500	26,449	8,000	[집행시기 미도래] 유니세프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친화도조사 후 주민토론회 실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무관리비	75,330,000		39,330,000	[연도내 지출 불가] 대체부지 검토 추진중
		시 설 비	9,340,140	36,192	5,335,814	

나. 사고이월 사업 현황 : 5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 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어르신 장애인과	금천 어울림 복지센터 운영 (성인지)	시설비	106,201	106,070	4,950	본 인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인증기관(한국생산 성본부인증원) 재심사 일정 이 '22년으로 지연
가 족 정 책 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 설 비	571,789	567,367	40,812	구립기쁨어린이집 외벽개선 디자인 협의 지연 및 장마로 인한 공사 일정 차질로 기한 연기
	구립금주 어린이집 대체신축	시 설 비	2,469,071	2,430,012	50,226	구립금주어린이집 별관 신축공사('21.12.24준공) 후 노후된 본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실시하여 '22.3월 확충 개원 추진
아 동 청 소 년 과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20,000	19,600	9,800	유니세프 지침에 따라 용역 발주시기 조정
	금천 청년꿈터 신축	시 설 비	3,254,301	2,094,143	621,795	중분리 검증위원회 심사가 2021. 10. 13. 완료 후 분야별 공사 발주 시행으로 계약 일정이 다소 늦어짐.
		감 리 비	100,000	39,604	100,000	
시설부대비		20,049	16,792	19,756		

6.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289,196,047	289,322,231	277,882,317	1,252,476	10,187,435	96%
복지정책과	16,126,365	16,029,462	14,460,303		1,569,159	90.2
복지지원과	62,778,793	62,829,688	61,497,170		1,332,517	97.8
어르신장애과	127,303,719	126,972,583	126,179,150		793,432	99.3
가족정책과	67,560,912	67,822,377	61,434,081	1,234,676	5,153,619	90.5
아동청소년과	15,426,258	15,668,121	14,311,613	17,800	1,338,708	91.3

7.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2,693,501	697,610	872,238	175,144	3,390,597
자활기금	935,442	113,656	233,656	120,000	1,049,099
노인복지기금	353,392	△258	3,681	3,940	353,134
양성평등기금	402,064	53,877	105,082	51,204	455,942
청년미래기금	1,002,603	529,819	529,819	0	1,532,422

V.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출예산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2%로 2020년도 92.4%보다 0.2%p 감소
-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2,430만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 120억 6,040만원보다 21억 3,699만원 감소
- 집행잔액은 총 82억 8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이며, 2021년도 집행잔액 47억 3,080만원보다 34억 7,780만원 증가됨.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29억 7,770만원, 낙찰차액 5,240만원, 지출잔액 51억 8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5,450만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대비 세입결산액 7억 9,3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결정액 11억 4,850만원 대비 56.9%인 6억 5,420만원을 징수함.
-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액 6억 4,5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3%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집행율은 10.7%이며 해당 부서는 세심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집행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복지가족국의 예산 전용은 총 3건 1,687만원을 전용하였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1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6건 90억 7,700만원**이며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5건 8억 4,730만원**이 이월되었음.

5.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 2,891억 9,6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2,893억 2,230만원이며
 - 집행액은 2,778억 8,230만원이며
 - 이월액 12억 5,200만원, 집행 잔액은 101억 8,740만원으로 집행률은 96%임.

6. 기금 결산

-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26억 9,350만원이며
 -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9,760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억 9,050만원임.

7. 검토 의견

-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의 집행률이 구 전체 집행률(85%) 보다 높게 나타나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 예측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비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가 요구되며
- 다음년도 예산 편성 및 심사에서는 집행실적에 따른 부진사업의 정비,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 등의 개선 노력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